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안내

■ 공급대상

1. 용인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자
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 ▶ ② 순위 ▶ ③ 거주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당첨자 선정방법

1	- 소득기준 :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 추첨공급(30%) 분류 ① 우선공급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 2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인 자 ③ 추첨공급 30% : 공급 후 남은 물량(30%)은 ①, ②낙첨자 + 추첨제 청약자(소득기준은 초과 하나부동산 가액기준 충족자) 에게 공급
2	- 동일 요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에 의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자녀가 있는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포함 ② 2순위 : 자녀가 없거나 2018. 12. 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신혼부부
3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
4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5	미성년 자녀 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